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 례 안
(17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4-140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4-141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5
2024-142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과)	13
2024-143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15
2024-144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1
2024-145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25
2024-146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31
2024-147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35
2024-148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43
2024-149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47
2024-150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55
2024-151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안전총괄과)	59
2024-152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	61
2024-15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65
2024-154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복농촌과)	79
2024-155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83
2024-156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	87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불부합 사항,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용어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여성가족부 권고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불부합 정비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2)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제3조)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3)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안 제4조)

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용어 및 인감증명서 정비(안 제5조·제6조)

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7조·제8조)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양성평등기본법」: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행정대집행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9.~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실명란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한다.

제6조(「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7조(「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민선8기 후반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확대함(안 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3절)

- 1) (현행) 3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조정) 3국 2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2)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 3)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 4)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나. 정원 조정함: 총수 변동 없음(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8.~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송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CCTV 관제”를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과”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로 한다.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를 “제4절 거창사건사업소”로 하고 제3절(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창골프장사업소

제18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제18조의3(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의4(소관사무)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u>문화관광과</u>,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p> <p>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경제, 기업성장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u>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u>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p>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p> <p>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경제, 기업성장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u>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3. <u>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송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u> 4.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u>CCTV 관제</u>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u>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u>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

현행	개정안
<p>사항</p> <p>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p> <p>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p> <p>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p> <p>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p> <p>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한 사항</p> <p>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p> <p>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p> <p>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정,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p> <p>② 농업기술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에 둔다.</p> <p>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를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거창골프장사업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2(설치)</u> ① 법 제127조에 따라 <u>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3(소장)</u> 거창골프장사업소에 <u>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8조의4(소관사무)</u>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u> 거창사건사업소</p> <p>제19조~제21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관한 사항</u> 3. <u>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u> 거창사건사업소</p> <p>제19조~제21조 (현행과 같음)</p>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계	796									
정무직	1									
일반직	소계	760 759								
	3급	1	1							
	4급	4	3		1		1			
	5급	42 39	16 15	3	7 6	5 4	2	4 3	1	11
	6급 이하	713 715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연구사)	7									
지도직 (지도사)	27 28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1) 위임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 폐지

2)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지됨

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 제3조)

나) 자치분권협의회(현행 제6조~제11조)

(1) 협의회는 최초 신규 위촉식만 하고 회의 개최 실적 없음

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2조)

(1) 자치분권 촉진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없어 지원 실적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4.~11. 1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임기 등 현 실태에 맞게 장학금 선발조건을 확대·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장학금의 자격을 완화·정비함(안 제2조의2)
 -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
 - (변경) 이장
- 다. 법령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3조,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수요조사 후 2025년 본예산 편성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5. 29.~6.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종전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이장자녀 장학금”을 “제2조에 따른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을 “거창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학”을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를 “제2조의2”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군수는 제1항에도”로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로 한다.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조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지급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2조(장학생의 자격)</u> <u>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u> 2. <u>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 일 것</u> 	<p><u>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u>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조의2(장학생의 자격)</u> <u>제2조에 따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u> 2. <u>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 중일 것</u>
<p><u>제3조(추천)</u> <u>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u></p>	<p><u>제3조(추천)</u> <u>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u></p>
<p><u>제6조(장학금액)</u> <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u></p>	<p><u>제6조(장학금액)</u> <u>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p><u>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u></p>
<p><u>제7조(장학금의 지급)</u> <u>① 장학금은 학</u></p>	<p><u>제7조(지급방법 등)</u> <u>① 장학금은 학기</u></p>

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3.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삭 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조건 완화

나. 관련조문: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나. 장학생 선발조건에 따른 수요조사 후 예산편성

구분	산정금액	산정내역
계	23,100	40명
중학생	2,600	200천원×13명= 2,600천원
고등학생	6,500	500천원×13명= 6,500천원
대학생	14,000	1,000천원×14명=14,000천원

※ 예산 범위 내 최대 40명 선발 가능[조례 제5조(이장 정원의 15%)]

행정과장 윤광식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1) 2025년 예산 35,400천원 추경 확보 예정
- 2) 도비 6,600천원 확정 통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건강검진 대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2. 단체보험 가입 3. 모범이장의 선발 및 표창: 연 2회 4. 장기 우수이장 국내외 연수: 연 2회 5. 군단위 체육·수련대회: 연 1회 6. <u>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u>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이장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사기진작(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100%)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도비(15%)	6,600	6,600	6,600	6,600	6,600
군비(85%)	35,400	35,400	35,400	35,400	35,4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42,000천원 = 1인 300천원 × 140명

1. 지원 대상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 이장 140명

나. 이장 정수 267명의 50% 지원

2. 지원 금액

가. 1인당 300천원

나. 격년제

작성자 행정과장 윤광식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청년친화도시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5조)
- 라.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함(안 제6조)
- 마. 기초조사 및 정책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5억원 확보예정(국·도·군비)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5.~11.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 나. 관련 조문: 지원(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국비 (국무조정실)	250	250	250	250	250
도비·군비	250	250	250	250	25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매년 약 5억원

1.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 지정일부터 5년간 예산 지원

- 가. (국비) 2.5억원
- 나. (도비·군비) 2.5억원: 50% 이상 매칭

2. 지원사업

- 가. 대상: 관내 19세~45세 청년
- 나. 사업: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현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금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안 제4조)

- 1) 현행)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변경)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3) 예산 범위: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군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20-000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 338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0. 30.~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금의 일부를”을 “등록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p>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범위 확대
- 나. 관련 조문: 등록금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준비	338	338	338	338	33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338백만원=150명×2,253천 원

- 1.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미수혜자 및 미신청자 수 150명
- 2.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금액: 2,253천원
= 연간 등록금(6,879천원) - 장학금 평균 수령액(4,626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안 제6조)
- 나. 법령 개정사항 및 불부합사항, 문장 등 정비(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3. 참고 사항

-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지방자치법」 제28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2,100천원 확보예정(위원수당)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10.~10.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1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내”를 “거창군 소재”로 한다.

제4조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종합계획”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

성을 반영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제10조 중 “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내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p>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처우개선위원회 기능대행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수당

나. 관련 조문: 처우개선위원회(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 대행

나. 위원회 연 1회 개최 시 연 2,100천원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1명 × 수당 100천원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 복지를 증진하여 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향후 비용 발생 시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2.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지원센터)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상담·조사·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인권 및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관련 조문: 지원사업(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

나. 경상남도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서 도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군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비용 미발생

다. 향후 지원사업 종료 시 상담, 교육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연간 2,000천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시기 미정)

작 성 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4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미신고 경로당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신고된 경로당으로 양성화하여 지역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1) 시설 규모, 설비 기준 등의 요건을 정함
- 2)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에 한정하여 지원

나.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정비함(안 제6조)

다.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노인복지법」 제36조·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방침

다. 예산조치: 2025년 추계예산 1,174백만원 확보예정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3.~11.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경로당 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 가. 읍: 10명
 -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제4조 조 제목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제5조 중 “그 운영실태”를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인복지법</u>」 제47조에 따라 <u>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u>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경로당</u>”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u>」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p> <p>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경로당 시설 운영비</p>	<p>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경로당 등</u>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경로당</u>”이란 「<u>노인복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u>군</u>”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u>군수</u>”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u>시설</u>”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읍: 10명</p> <p style="margin-left: 20px;">나. 면: 7명</p> <p>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p> <p>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p> <p>제4조(지원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로당 시설 운영비</p>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5.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및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 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미신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신설
- 나. 관련조문: 재정 지원 등(안 제3), 지원 범위(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미신고 경로당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비(50%)	587	587	587	587	587	2,935
도비(15%)	176	176	176	176	176	880
군비(35%)	411	411	411	411	411	2,055

- 나. 2024년 기준 국비 596, 도비 179, 군비 417

3. 관련 의견

실질적으로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비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5년 추계예산 1,174백만원

- 1. 경로당(438곳)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1,169백만원
- 2. 미신고 경로당(8곳)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5백만원
 - 가. 냉방비: 1회 25만원×8곳 = 2백만원
 - 나. 난방비: 1회 25만원×8곳 = 2백만원
 - 다. 양곡비: 1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를 위하여 읍·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들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에 기금 지출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함(안 제4조)

- 1)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 2)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 2) 「지방회계법」 제46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8.~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4.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u></p> <p>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p> <p>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주사</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u></p> <p>1. 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p> <p>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p> <p>3.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p> <p>4.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p>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1)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2) 정부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11.~10.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 6. 28.)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36천만원 확보(국50%, 도15% 군35%)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9.~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를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를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나. 관련 조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만원)

세출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436	436	436	436	436
국비	218	218	218	218	218
도비	65.4	65.4	65.4	65.4	65.4
군비	152.6	152.6	152.6	152.6	152.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5년 예산 436천만원

1. 관리대행자 1곳

2. 관리대행자의 업무범위

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다. 현장조사·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행가능한 산림사업

가.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
행하는 사업

나.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

다.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마.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자.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차.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카.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타.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
행하는 사업

파.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거.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너.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작성자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창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신축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비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8조·제19조)

1) 휴원일, 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나.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정함(안 제11조의2, 제25조, 별표 3)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20조, 별표 1, 별표 2)

라. 입장료등의 반환을 정함(안 제23조)

마. 창포원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8조의8·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9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개방 및 운영시간 등) ① 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입장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다.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아동
-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의2(금지행위)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 중 “제11조 후단”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3조(입장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할 때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창포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군수가 퇴장을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장료등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제25조(과태료)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1 및 별표 2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중전 별표 2 및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8조(휴원일)</u> ① <u>창포원의 정기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원일에도 야외 수변생태정원은 개방할 수 있다.</u></p> <p>1. <u>매주 월요일</u> 2.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에 따른 <u>공휴일</u></p> <p>② <u>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휴원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9조(개방 및 운영 시간)</u> ① <u>창포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9조(개방 및 운영시간 등)</u> ① <u>창포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u></p> <p>② <u>창포원 및 시설별 운영 시간과 휴원일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1조(입장 및 행위 제한)</u> <u>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u></p>	<p><u>제11조(입장 제한)</u> <u>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창포원과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u></p> <p>가. <u>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u> 나. <u>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u> 다. <u>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u> 라. <u>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u></p>

하 아동

마.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바.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1조의2(금지행위) ① 영 8조의6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② 군수는 창포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필요시 퇴장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 후단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추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추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9조(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① 창포원 내 키즈카페 및 북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키즈카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

<삭 제>

지로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키즈카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및 자전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키즈카페 입장제한)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에는 일일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신 설>

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입장료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입장하지 아니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할 때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창포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군수가 퇴장을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p>반환한다.</p>
<p><신 설></p>	<p><u>제24조(창포원 활성화 지원)</u> 군수는 창포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창포원을 방문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장료등 감면 2. 거창사랑상품권 등
<p><신 설></p>	<p><u>제25조(과태료)</u> 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란 별표 3과 같다.</p>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제20조 관련)

1. 창포원

구분	입장료
개인	3,000원
단체: 20명 이상	1,500원

2. 주차장

구분	사용료				
	30분 이하	30분 초과~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1일)
가. 소형차 1) 승용차 2) 15인승 이하 승합차 3) 1톤 이하 화물차	무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나. 대형차 1) 승합차(버스) 2) 화물차(트럭)		2,000원	4,000원	6,000원	10,000원

3. 키즈카페

구분	사용료	
	2시간	추가
어린이	3,000원	10분당 500원
성인	1,000원	-

4. 자전거

구분	사용료	
	1시간	추가
가. 4인승, 6인승	8,000원	30분당 500원
나. 2인승	4,000원	
다. 1인승, 어린이용	2,000원	

5. 족욕체험장

기준	사용료
30분	5,000원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1. 입장료 면제 기준

-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사람
- 다. 65세 이상인 사람
- 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사. 다음의 법률(이하 이 표에서 “보훈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차.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타.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 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 키즈카페, 자전거대여소, 족욕체험장 감면 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마.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자녀나 손자녀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	100분의 50

[별표 3] 과태료(제25조 관련) <신 설>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령 및 조례 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영 제8조의6 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	3	3
2. 노점상 등 영업행위		제11조의2 제1항제2호	3	3	3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	3	3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유료화에 따른 시설 정비: 울타리, 매표소,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족욕체험장
- 2) 낙동강유역본부에 하천점용료 지출(385,764m²)
- 3) 근로자 인건비: 매표소 2명, 웰니스센터 3명
- 4)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

나. 관련조문: 입장료 등(안 제20조), 창포원 활성화 지원(안 제2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총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군비	1,585	395	290	295	300	30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시설공사: 총 1,490백만원

가. 2024년 1,380백만원

나. 2025년 110백만원 지출 예정

2. 인건비: 160백만원(38백만원 x 5명)/연

※ 매년 3% 증가 추산

3. 하천점용료: 110백만원(385,764m² x 290원)/연

4. 웰니스센터(족욕체험장) 운영비: 15백만원/연

5. 창포원 활성화를 위한 거창사랑상품권 지원 등은 필요시 예산확보 예정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직매장의 개설·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 지원
- 라.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제1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31~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거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이하 “직거래장터등”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을 이용하는 지역농산물 판매자 모집
2. 직거래장터등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등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직거래장터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등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3.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행사. 이 경우 그 행사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의 조직화 지원) 군수는 군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계 구축
2. 농산물의 종류별 조직화
3.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
4.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운영(안 제4조)
- 나.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안 제5조)
- 다.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비용: 10백만원
 - 1) 1백만원 × 연 10회
- 나. 거창한마당대축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3,000명
- 다. 축제·행사 시 직거래장터 상품권·할인권 지원: 15백만원
 - 1) 5,000원 상품권·할인권 × 1,000명 × 연 3회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0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41.2퍼센트(2023년 32.84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수도법」 제38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 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20	640	704	774	851	936	1,030
	21~30	850	935	1,029	1,132	1,245	1,370
	31이상	1,110	1,221	1,343	1,477	1,625	1,788
일반용	1~30	800	880	968	1,065	1,172	1,289
	31~50	970	1,067	1,174	1,291	1,420	1,562
	51~100	1,120	1,232	1,355	1,491	1,640	1,804
	101~300	1,290	1,419	1,561	1,717	1,889	2,078
	301이상	1,450	1,595	1,755	1,931	2,124	2,336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750	825	908	999	1,099	1,20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5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8.6퍼센트(2023년 5.46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u>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u>시행규칙</u>,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나.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행	개정안				
		현행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정용	1~20	160	184	212	244	281	323
	21~30	220	253	291	335	385	443
	31이상	290	334	384	442	508	584
일반용	1~30	200	230	265	305	351	404
	31~50	240	276	317	365	420	483
	51~100	280	322	370	426	490	564
	101~300	330	380	437	503	578	665
	301이상	420	483	555	638	734	844
산업용	<u>1세제곱미터당</u>	200	230	265	305	351	404